

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지 논문 심사규정

제정 : 2001년 1월 2일

개정 : 2003년 4월 4일

1. 이 규정은 연구지에 게재하고자 투고한 연구논문과, 연구단보, 총설, 초청논문, 기술사례, 설계작품 등의 심사에 대하여 적용한다.
2. 접수된 원고에 대하여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하되 심사위원과 투고자의 소속 및 이름은 밝히지 않는다.
3. 투고된 논문의 판정은 “수정 없이 게재가능”, “수정 후 게재 가능”, “수정 후 재심”, “게재불가”로 구분한다.
 - (1) 심사위원 3인이 모두 “수정 없이 게재 가능” 또는 “수정 후 게재 가능”으로 판정한 논문을 연구지에 게재한다.
 - (2) 심사위원 중 2인이 “게재불가”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.
 - (3) 심사위원 중 1인이 “게재불가”로 판정한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제 4의 심사위원을 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. 편집위원회는 이 위원의 판정에 따라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.
 - (4) “수정 후 게재” 판정을 받은 논문은 투고자의 수정사항을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여 게재한다.
 - (5) “수정 후 재심”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자의 의견에 따라 수정한 후 재심을 받되 재심결과가 “게재불가”일 경우 제 3자에게 심사를 맡기지 않으며 게재할 수 없다.
4.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서만 원고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, 최종 판결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5.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.